

2022년도 제2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(안) 검토보고

(안전생활국 소관)

2022. 08. 29.

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○ 2022. 08. 10.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(Δ)감	
			금 액	비율(%)
세 입	37,279,494	28,670,964	8,608,530	30.03
세 출	87,658,056	74,178,196	13,479,857	18.17

3. 세입현황

부서별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(Δ)감	
			금 액	비율(%)
계	37,279,494	28,670,964	8,608,530	30.03
도 시 안 전 과	946,835	128,854	817,981	634.81
청 소 행 정 과	11,962,231	11,403,753	558,478	4.90
일 자리 경 제 과	24,026,728	16,886,128	7,140,600	42.29
환 경 과	343,700	252,229	91,471	36.27

▣ 세입 검토의견

- **안전생활국**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억853만원(30.03%) 증액된 372억7,94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부서별 주요 내용을 보면,
- **도시안전과** 세입 추가예산은 8억1,798만원(634.81%) 증액된 9억4,683만원으로 주요내용은,
 - 특별교부세¹⁾로 폭염대책비 3,560만원
 - 국고보조금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,500만원과 학교CCTV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1억800만원,
 - 시비보조금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,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,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문 설치사업 등으로 4억9,621만원
 - 국·시비보조금으로 2021회계연도 보조금 미사용잔액 1억5,317만원 등임
- **청소행정과** 세입 추가예산은 5억5,847만원(4.90%) 증액된 119억6,223만원으로 주요내용은,
 -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²⁾으로 도로 살수용 민간살수차 추가 운영비 1,870만원

1) 특별교부세 [特別交付稅 , special grants]

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. 특별교부금이라고도 한다.

이에 비해 일반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.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나, 보통교부세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또는 자치단체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·복구·확장·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고 있다.

2) **조정교부금** :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고,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.

- 국고보조금 전기 살수차 구매 5,000만원,
-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사업, 2021 반입량관리제 목표달성 인센티브, 음식물류 폐기물 중·감량기 보급사업 등 13건의 시비보조금으로 3억8,103만원,
- 국고보조금으로 2021회계연도 보조금 미사용잔액 2,275만원,
- 시비보조금으로 2021회계연도 보조금 미사용잔액 8,598만원 등임.

○ **일자리경제과** 세입 추가예산은 71억4,060만원(42.29%) 증액된 240억

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제36조(시·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)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조정교부금: 시·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
2. 특별조정교부금: 시·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

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36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·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.

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조정교부금의 종류)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.

제11조(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)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.

1.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
2.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·복구·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3.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.

④ 자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⑤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

2,672만원으로 주요내용은,

-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, 서울사랑상품권 발행,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6,574만원,
-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사업 47억9,300만원 등 시비보조금 59억 9,497만원
- 국시비 2021회계연도 보조금 미사용잔액 10억4,177만원,
- 국시비 2021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후 정산잔액 3,811만원 등임.

○ **환경과** 세입 추가예산은 2,468만원(36.27%) 증액된 3억4,370만원으로 주요내용은,

- 국고보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1,828만원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사업 980만원,
- 시비보조금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사업 980만원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비 2,700만원,
- 국시비 2021회계연도 보조금 미사용잔액 1,645만원과 시비 2021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53만원임.

4. 세출현황

□ 부서별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(△)감	
			금 액	비율(%)
계	87,658,053	74,178,196	13,479,857	18.17
도 시 안 전 과	6,299,500	5,426,119	873,381	16.10
청 소 행 정 과	49,580,003	46,195,024	3,384,979	7.33
일 자리 경 제 과	31,138,364	22,012,280	9,126,084	41.46
환 경 과	640,186	544,773	95,413	17.51

■ 세출 검토의견

- 안전생활국 세출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4억7,985만원(18.17%) 증액된 876억5,8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- 도시안전과 세출 추가예산은 8억7,3381만원(16.10%) 증액된 62억9,950만원으로 주요내용은,
 - 폭염대책 추진으로 3,560만원(특별교부세), 무더위쉼터 운영 1억620만원(시비), 무더위쉼터 냉방비 3,810만원(시비)
 -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2,500만원(시비)
 -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으로 9,700만원(시비)
 - 민방위 통합관리로 △3,180만원(시비 △100만원, 구비 △3,080만원)이 감액되었음.
 -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 5억3,250만원(시비 2억4,750만원, 구비 2억8,500만원)

- 도시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로 국비 1억800만원이 증액되고 구비 1억800만원 감액,
-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,237만원임.

○ **청소행정과** 세출 추가예산은 33억8,497만원(7.33%) 증액된 495억8,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,

-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360만원(시비)
- 월곡차고지 공사 관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정 용역 1,000만원
- 노원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△1억8,774만원 감액
-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전동차 보급 3,000만원(시비)
- 월곡차고지 대체부지 확보공사 1억6,584만원,
- 도로 살수용 민간살수차 추가 운영 1,870만원(특별조정교부금)
- 도로물청소 용수비 5,400만원(시비)
- 원룸촌 재활용정거장 확대설치 2,100만원(시비)
-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임차비 4,032만원(시비)
- 음식물쓰레기 종량장치(RFID) 구매설치 6.370만원(시비)
- 서울형 리엔업사이클플라자(재활용센터) 건립 17억7,800만원(총사업비 58억9,800만원, 시비 41억2,000만원 확보)
- 전기 살수차 구매 1억원(국비 5,000만원, 시비 5,000만원, 구비 4,000만원)
- 도로 분진흡입청소차량 필터비 2,250만원(시비)
- 공무원 인력운영비로 10억4,345만원 증액되었으며,
-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1,413만원임.

○ **일자리경제과** 세출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억2,608만원(41.46%) 증액된 311억3,836만원으로 주요 내용은,

-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으로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495만원(시비)과 2022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1,200만원(시비)
-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 4,500만원(시비) 및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 전 300만원(시비)
-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4,640만원(국비70, 시비 18, 구비 12)
- 길음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사업 2,200만원(시비)
-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187만원(시비)
-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△2억736만원(국비 40, 시비 12, 구비 18)감액 편성,
- 신규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프로그램 3,000만원(시비)
-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3,000만원(시비)
-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지원사업 47억9,300만원(시비)
- 가격표시제 업무지원 176만원(시비)
-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(2차 추가지원) 6억5,665만원(국비 1억 2,320만원, 시비 3억6,960만원, 구비 1억6,385만원)
- 성북구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6억8,854만원(구비)
-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중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사업 4,500만원(시비 3,500만원, 구비 1,000만원)
- 성북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△3,702만원(시비) 감액
-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 3억4,451만원(시비 2억5,839만원, 구비 8,612만원)
-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1억1,518만원(시비)
-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,232만원(국비 326만원, 시비 339만원, 구비 1,566만원)
-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(인센티브 사업) 5,000만원(국비)

-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2,058(국비 90, 구비 10)
- 안심 일자리 사업 인건비 △9,767만원(시비6,837만원, 구비 2,930만원) 감추경
-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△314만원 : 국시구비 매칭사업에서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억4,802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1억4,566만원이 추경 예산 편성
- 성북노동권익센터 운영 829만원 : 자치구별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한 시비 지원액 확정으로 시비 9,723만원을 추경 편성하고 구비 8,894만원 감액 편성함.
-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1억5,850만원(시비)
-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억8,062만원임.

○ **환경과** 세출 추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,541만원(17.51%) 증액된 6억 4,018만원으로 주요내용은,

- 석면피해구제급여 1,828만원(국비)
-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그린리더 양성 360만원(시비)
- 에코마일리지 활동지원 960만원(시비)
- 성북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,700만원(시비)
-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 800만원(국비 50, 시비 50)
-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800만원(국비 50, 시비 50)
-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,093만원

5. 검토결과

-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안전생활국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.